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일하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장선배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7년 8월 21일

나. 회부일자 : 2017년 8월 24일

3. 제안이유

상위법령과 의미가 다른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도내 기업의 녹색제품 인증과 인증 유지에 따른 경비 지원 및 충청북도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변경

나. 타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일부개정(안 제7조)

다. 상위 법령의 의미가 축소 또는 확대, 위배되는 조항 삭제

(안 제9조, 제10조)

라. 도내 기업의 녹색제품 인증과 인증 유지에 따른 경비지원(안 제12조)

마.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2)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상위법과 맞지 않는 사항을 삭제하고, 충청북도 녹색제품구매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만을 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9조와 같이 의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규정하였으며,
- 같은 법 제6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는 도 조례로 일괄적으로 규율할 것이 아니라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같은 법 제17조의3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구매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의 종류와 지원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동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17. 8. 14.~'17. 8. 20.)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과 맞지 않는 사항을 삭제하고, 충청북도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